

**2025년 농협중앙회 · 농협재단
특별감사 결과 공개문**

2026. 7.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 감사근거

-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규정 및 시행령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감사배경 및 목적

-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 제기됨에 따라 국회 등에서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책 요구
-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의 기관운영·예산집행·업무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 및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 등 조치하여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감가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5. 11. 24. ~ 12. 19.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6명

□ 감사대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 서대문구 소재), 재단법인농협재단(서울 영등포구 소재)

□ 중점 점검사항

- (운영 전반) 인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채용 공정성, 계약 제도 및 집행 적절성, 상품권·홍보물품 구입·관리 현황, 성과급 제도 등
- (비위 의혹) 물품 납품 등 의사결정 과정 투명성 및 적정성, 의혹 관련 당사자간 계약 방법 및 현황, 물품 납품 및 배포내역 적정성, 외부기관의 조사내용 검토 등

Ⅱ 감사 결과

1	조합감사위원회 등의 인사 독립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개선	관계기관	□부, △부문, ○위원회

-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 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된 직원에 대해 독립적으로 승진 및 이동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된 인사권이 있는 상호금융 및 조감위의 정기인사 시 승진 서열을 제출하도록 하고 승진 규모를 조정하여 인사에 관여했으며,
- 「직제준칙」에 자체 인사권이 있는 상호금융과 조감위에 대한 인사까지 인사총무부의 업무로 포함되어 있고, 상호금융과 조감위의 자체 인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독립된 인사권이 있는 조합감사위원회 등의 승진 서열 관여 및 승진 규모 조정 등으로 인사독립성을 훼손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인사의 공정성과 인력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감사위원회 및 각 부문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방안 마련 (개선)

「농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에 맞게 「직제준칙(분장업무)」 개선 (개선)

조합감사위원회 등이 인사심의위원회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개선)

2	특별활동 수당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개선	관계기관	◇국, ☆처

-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에 대해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 특별활동수당을 통상급여처럼 해당자 전원에게 매년 2회 동일액을 지급하고 있고 특별 활동 증빙에 필요한 서류(활동내용, 여비증빙 등)도 미징구하고 있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상자 전원에게 통상 급여의 형태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특별활동수당의 지급을 관련 절차 개정 전까지 중단 (시정) 특별활동에 대한 증빙을 통해 실제 참여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수당 지급 관련 규정 정비 (개선)

3	계약 관련 내부 관리 체계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부, ♀부

-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계약사무취급자를 임명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계약사무모니터링준칙」에 따라 내부통제시스템에 계약사무처리 보고를 하여야 하나,
- 계약사무취급자 임명 없이 각 사업담당자가 직접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최근 4년간 무분별하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79.9%)했고,
- 내부통제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최근 4년간 미등록 수의계약 건은 모니터링을 미 실시(19.4%)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소속사무소의 계약 전 건에 대해 총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계약 체결 전 내부통제시스템 등록 등의 개선 방안 마련 (개선)

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통보	관계기관	♣부, □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회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 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회장 수행직원 명의로 배정된 법인카드를 통해 식사비, 답례품 구입비 등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이 있음에도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 중인 임직원 또한 수행직원 명의로 집행된 내역이 있음에도 해당 임직원 명의의 법인카드를 집행된 내역만 공개하고 있었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실제 기관장이 참여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있음에도 단순히 기관장에 배정된 법인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관장 또는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배정된 법인카드 사용내역 외에 수행비서가 기관장 또는 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내역을 포함하여 공개하는 방안 마련 (통보)

5	무이자자금 사용범위·이행조건 미준수 및 사후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개선, 통보	관계기관	♡부, ♣부, ▣부, ▢부

- 무이자자금 지원을 요청한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무이자자금을 지원 받은 회원이 각 소관 부서에서 마련한 ‘자금 지원 기준(안)’ 등의 이행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진한 회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하나,
- 무이자자금 사용범위 미준수, 자금운영 미흡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사후관리 적정여부에 대한 감사는 유통지원 사업 등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음
- 또한 무이자자금 사용범위 미준수의 경우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구분’과 ‘업무방법서 상 사업구분’이 차이가 있거나 ‘자금 지원 기준(안)’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발생한 사례가 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무이자자금 사용범위 미준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산정하고 환수 (시정)

무이자자금 지원목적과 사용범위 및 이행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 시 지원목적 등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절차 마련 (개선)

농업지도사업 업무방법서의 사업구분이 「교육·지원사업규정(예)」 및 ‘자금 지원 기준(안)’과 동일하게 운영되도록 개정 (개선)

무이자자금 집행 기준(이행조건)을 ‘기타관련 사업’이 아닌,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대상·범위로 명확히 하고, 홍보비·간접비용 등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한 ‘자금 지원 기준(안)’을 마련 (개선)

지적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조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결과를 보고하고, 소관부서 및 지역본부 감사 시 적정하게 사후관리실태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사 (통보)

6	조합 감사 결과 징계 등 처분 및 위원 구성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개선	관계기관	○위원회

- 「지도감사규정」 및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회원조합 감사 결과 사고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기준에 적합하게 징계하여야 하나,
- ○위원회는 회원조합 감사 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감사를 하고, 징계 의결 등에 있어 온정적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원 조합 감사 시 관행적·소극적 감사를 하고, 온정적인 징계 처분으로 감사 신뢰성을 떨어뜨린 ○위원회에 “부서경고” 조치 (부서경고)

○위원회 및 징계(변상)심의회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을 적정 비율 포함 하여 구성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 (개선)

7	조합 감사 결과 사후관리 및 조치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주의, 개선	관계기관	○위원회, ♥부

- 「지도감사규정」 및 「회원조합 감사 사후관리준칙」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 결과 처분에 부합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확인 하여야 했고, ♥부는 감사 결과 지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자금지원 제한 및 업적평가에 반영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위원회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부는 자금지원 제한 및 농축협 업적평가기준에 따른 감점 등을 철저히 반영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있음에도 회원조합 관리 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에 “부서경고” 조치 (부서경고)

조합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위원회에
“부서주의” 조치 (부서주의)

♡부가 회원 조합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원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감사 결과 등을 업적평가기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요구 (개선)

○위원회가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 요구
(개선)

8	조합 감사 주요 지적사항(계약서류 취급 소홀) 개선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처, □부

- 「지도감사규정」에 감사는 종합감사, 특별감사, 전산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농협법」에 따라 자산총액이 8천억 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고 「감사규정」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조합에서 체결되고 있는 계약관리주체와 시스템 부재로 전산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감사를 통해서만 감사 가능하며, 최근 4년간 주요
지적사항으로 자체 구매계약업무 취급 소홀 건 등이 지속 지적(611건)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자산총액이 8천억 원 이상인 조합은 1,110개소 중 185개소만 해당되어
상임감사제 운영 및 일상감사 실시, 그 외 일상감사 미실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원조합에서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 전산감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조합의 일상감사 의무화 등의 대책 마련 (개선)

9	회원조합 민원 제보 건 감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처

- 「회원조합 제보준칙」에 따라 검사담당부서에서 제보센터를 두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 지시 또는 직권 남용, 횡령 또는 배임, 금품수수 향응, 성희롱 등 임직원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히 조사 후 민원 제보처리를 해야하나,
- 최근 4년간('22~'25) 접수된 민원 제보 건에 대하여 조합장 비위 신고, 직장내 괴롭힘, 채용 비위 신고에 대해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관련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해 민원 신고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개선)

10	해외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개선	관계기관	●연구소, ■부

- 국외출장자에 대해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해 동 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실제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무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 회장 등 임직원의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 숙박비 기준을 초과하여 실비로 지급하면서 국외출장 계획에 관한 내부 방침 문서에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여비규정 제6조에 따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라고만 기재하여 결재받은 뒤 지급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 숙박비 기준을 초과하여 실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시정)

「여비규정」 개정 등을 통해 여비 실비 지급 시 방침 문서에 사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 (개선)

11	상시 경영자문 계약 및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실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효과성 분석 등을 검사하여야 하나,
- 객관적·전문적 근거 없이 “상시경영자문” 계약을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근거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고, 과도한 자격요건을 두어 소수의 업체만 입찰 참여하도록 제한함
- 과업 내용은 다수 전문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문에 해당하였으며, 성과 평가, 효과성 분석 없이 동일 업체 지속 계약 체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특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통보)

12	업무추진비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실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비목과 성격이 맞는 증명서류를 첨부할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하며, 지급회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행사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나,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임에도 업무추진비로 지급

처리한 내역이 있으며, 지급회의서 내용란에 필수 기재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급 담당자가 지급회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통보)

13	특별성과보수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국

- 상임임원 및 집행간부의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특별히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필요성, 지급액 등을 포함한 지급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지급에 앞서 감사위원장의 일상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나,
- '24년 제15차 이사회에서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1인 안건으로 당일 상정하고 참석한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하여 별도 사전검토 절차 없이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일상감사는 이사회 의결 후에 추진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일상감사 등 충분한 사전 검토 절차 없이 특별성과보수를 지급한 ◇국에 “부서주의” 조치 (부서주의)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원의 보수는 총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개선)

14	□□장 복무 및 겸직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통보	관계기관	□부

- □□장은 「계약직직원 운용준칙」에 따라 출장하여야 하고 겸직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겸직 승인을 받아야 하나,
- □□장은 ■조합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및 총회 참석을 목적으로 출장하였으며, 사외이사 재직에 대해 별도 겸직 승인을 받지 않았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겸직 승인 없이 회원조합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며 업무외 목적으로 출장한 □□장에 대해 “경고” 조치 (경고)

□□장이 겸직승인을 받도록 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출장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통보)

15	농업박물관장 채용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부

- 농업박물관장과 같은 전문직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직에 요건에 맞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나,
- 現 농업박물관장 채용 시 직전 채용까지 규정에 있었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정한 경력인정기관의 경력’을 삭제하고 채용심사에서도 박물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앙회 직원이 평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업박물관장 채용시 서류전형 경력 항목과 관련하여 박물관 근무경력 등 관련 경력이 반영되도록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시 관련 전문가 참여하여 평가하도록 개선 (개선)

16	병합심의 대상 징계사항 업무처리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 부

- 징계대상자가 수 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동일 위원회에 부의되었을 때는 병합심의 하고 가중 문책하여야 하나,
- '25년 발생한 징계대상자가 수 개의 사고와 관련한 징계 1건에 대해 보통인사위원회 징계 부의조서 자료에서 병합심의 가중방법에 따라 징계량을 제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명시된 비위 유형 또한 한가지 사고에 대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징계대상자가 다수의 사고와 관련한 징계건에 대해 병합심의 가중원칙에 따라 적정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재심하는 등 조치 (시정)

17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 부

-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나 직원 공개경쟁고시 실시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을 가진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최근 3년간 보통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이력이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같은 성별의 위원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 마련 (통보)

18	징계 임직원 범죄혐의 고발조치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 부

- 임직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고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부의·의결을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소속 임직원의 범죄행위 또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징계 처리 건이 있었으나 인사위원회 부의·의결을 통해 고발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인사위원회 부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발 조치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거나 인사위원회 부의·의결을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 조치 (시정)

19	비위 조합장에 대한 표창 및 정부포상 추천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 부

- 「인사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중앙회장 표창이나 정부포상 추천 시 비위 등의 사고관련자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은 표창 및 추천을 제한하여야 하나,
- 중앙회는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부적정한 예산 사용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합장에게 중앙회장 표창을 수여하고,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였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표창 수여 및 정부 포상업무 추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게 성폭력 및 성희롱 등에 대한 제한 등 징계 및 표창 관련 규정 등 개선 (개선)

20	승진심사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 부

-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경력·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인사고과 평정을 실시하고 각 작성단위에 맞게 종합인사고과 평점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매년 별도로 범농협 정기인사 방침(안)을 작성하여 방침에 있는 내신서열 산출 기준 및 내신권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며 내신점수 비율이 높아 전무이사 등 내신권자의 영향력이 과도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인사심의위원회에서 M·3급 승진심사평가표 산출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범농협 정기인사 방침(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제도 개선 (개선)

M·3급 승진 심의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내신의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고, 전무이사 및 각 사업대표이사에게 부여된 내신점수 비율 하향 (통보)

21	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 부

- 인사추천위원회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기준에 맞는 임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해야 하나,
-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부에서 추천한 3배수~5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고 있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임원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 객관성 등을 강화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하게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개선)

상임임원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복수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심사 결과가 고득점인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도록 조치 (통보)

22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 부

- 관련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나,
- 2023년 9월 인사추천위원회규정 개정 이후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의 범위를 이사회에서 재지정하지 않았고 인사추천위원 구성 시 특정 단체 및 학계를 직접 선정하여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 경영위원회를 통해 인사추천위원 선임안을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선임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고 있어 이사회의 인사추천위원 구성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위원은 농업인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모든 위원에 대해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경영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인사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가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조치 (통보)

23	직원 복무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통보	관계기관	☐ 부

- 중앙회 직원은 정해진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출장명령에 따라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장 전일까지 출장명령권자의 결재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결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두로 사전 신고한 후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하나,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출장내역 점검 결과 일부 직원은 근무지를 벗어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음에도 출장기록이 확인되지 않았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출장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관련자에 “주의” 조치 (주의)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통보)

24	해외파견 직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납부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시정완료)	관계기관	☐ 부

- 해외사업에 직원이 파견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국내 산재보험료와 해외 산재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지 않도록 협의·조치하고, 보험료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에 대해 징수·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 '22년부터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있음에도 파견 기간동안 국내 산재보험료와 해외 산재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였고, 과오납한 금액에 대한 환급신청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관련 내용을 회원조합, 자회사, 계열사 등에 전파하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통보(시정완료))

25	집행간부 임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임기를 보장한 인사·계약을 운영하여야 하나,
- 최근 10년간 중앙회 집행간부 44명 중 18명이 동일 직위에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였고, 11명은 이동, 7명은 중도 퇴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집행간부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 임기인 2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체결 또는 이에 준하는 임용·보장 장치 마련 (통보)

26	●지부 물축제 관련 계약 업무 절차 준수 미흡		
처분요구	경고, 통보	관계기관	●지부

- 물품 구매·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결정권자의 방침 문서 결재를 득하고 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을 하여야 하나,
- '23년 정남진 장흥물축제 홍보 물품 구매·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방침 결정권자인 지부장의 사전 방침없이 물품 납품업체 선정, 물품 납품업체와 구두 합의로 축제 기간 이전에 물품 수령, 행사 이후 물품 구입 문서 결재 및 대금 지급하였고, 구입 물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축제 홍보 물품 구매·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의 절차,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물품 등의 사용처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계약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관련자 3명에 “경고” 조치 (경고)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 수행 시 절차 및 검수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계약업무 수행 (통보)

27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 부

-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라 계약 업무를 추진하되 계약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농협 퇴직자 단체의 출자회사와 운전, 경비 등의 용역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협 퇴직자 단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조치 (통보)

28	합병특별자금(무이자자금) 지원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 부

- 흡수합병 농축협에 무이자자금을 지원 시, ‘합병특별자금 지원(안)’에 근거하여 경영진단(부실실사) 실시 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안)에서 정한 자금지원대상, 지원기간 등을 준수하여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나,
- 지원불가대상에 지원하거나 손실액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하는 등 관련 기준이 있음에도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원하거나, 지원기간(5년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합병특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이 있음에도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금을 지원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 (주의)

합병특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스스로 요청하는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검토’에 대한 방지 방안 마련 (개선)

29	정보목록 미공개 및 관련 규정 미흡		
처분요구	시정, 개선	관계기관	□부

-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계약 관련 정보,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계약 관련 정보,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 일부만 공개하고 있고, 중앙회 「정보공개운영지침」에는 법률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조치 (시정)

정보의 사전적 공개 대상,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시누락에 대한 대책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 등 마련 (개선)

30	위탁 교육 운영 계약업무 처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원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선택하고 일정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징수함으로써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기관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나,
- 직원 대상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으나 타 기관 비교 검토 없이 경쟁에 부쳐서는 해당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가능성이 낮은 기관이라는 사유로 계약보증금 등 징수를 면제하였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위탁 교육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적합한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원칙적으로 징수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통보)

31	♣신문사와 물품 계약 체결 방식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연구소, ▮부, ★실, ▯부

- 물품·용역계약은 일방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그 밖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목적 등을 검토하고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나,
 - '22년 ♣신문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3건의 계약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으로 수의계약이 어려워지자 '23년부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단건으로 계약 체결
 - 그 외 달력, 수첩, 홍보물 제작·공급 등 단순 물품 구매 계약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객관적·전문적 특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통보)

32	조합원 가입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부

- 중앙회 회원조합은 농업인이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입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 ◆조합에서 농협법과 조합원·준조합원관리업무방법(예)에서 제시한 조합원 가입 조건 외 ◆조합 6개월 이상 거래 실적을 요구하며 가입을 거절했다는 익명신고가 있었고,
- ◆조합에서 조합원 가입 여부를 심사한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 유무를 심사한 이력 자체를 확인할 수 없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조합원 가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가입신청서 접수 후 가입자격 심사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개선)

33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지도·관리 미흡		
처분요구	시정	관계기관	♡부

- 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등을 운영하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대상에 해당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하나,
- 전체 1,110개 회원조합 중 774개 조합에서 경감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경감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임금채권부담금 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고 미경감 금액을 환수받을 수 있도록 회원조합에 지도·안내 조치 (시정)

34	조합 외부감사인 선임 부적정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부

- 조합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회계감사 도입 취지에 맞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진과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 「외부회계감사수감준칙(예)」 제6조에는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며,
- 지속적으로 같은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특정 5개 회계법인이 전체의 35.2%에 달하는 조합을 감사하고 있어 감사인 편중 문제도 있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 또는 감사가 참여하는 별도 선임위원회로 이관하여 경영진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조치 (통보)

동일 외부감사인의 반복적인 선임을 제한하는 등 경영진과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35	합병경영자금 지원 사용범위·이행조건 확인 절차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부

- 조합상호지원자금과 이차보전자금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 계획(안)을 마련하고 심의회 의결을 받아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해 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지원 대상 회원조합 간 당기순이익 편차가 존재함에도 일괄 같은 금액의 합병경영자금을 지원하였고, 무이자자금 사용범위 및 이행조건의 누락 등을 검토하는 절차 또한 마련되지 않았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소관부서에서 마련한 '자금 지원 기준(안)'에 사용범위, 이행조건 등을 포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각 소관부서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제·개정 (개선)

36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부

- 무이자자금을 회원조합에 지원 시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매년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 무이자자금 지원 시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가 아닌 조합에 비해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인 조합에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무이자 자금이 특정 조합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각 회원조합의 조합원 수, 손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무이자자금 지원 운용계획 마련 (개선)

37	홍보게시대 설치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관계기관	罏부

- 회원조합에 지원하는 시설보조비가 「계약규정」 등에 따라 회원조합에서 적정한 계약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나,
- 홍보게시대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매업체를 농협 MRO샵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여 지원대상이 된 회원조합 36개소가 모두 같은 업체에서 홍보게시대를 구매하였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계약규정」과 다르게 계약 대상 업체를 제한하여 사업을 추진한 상호금융지원부에 “부서주의” 조치 (부서주의)

38	상호금융 컨설팅 연구용역 계약 추진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冊부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효과성 분석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유사한 용역의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 '22년, '24년 “상호금융 지속가능 방안” 관련 과업을 객관적·전문적 근거 없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근거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고, 다수의 전문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자문에 해당함에도 과도한 자격요건을 두어 소수의 업체만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함
- '22년 과업에 대한 성과 평가, 효과 분석 없이 '24년에 유사성격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2년 용역 계약금액에 비해 4.1배 증가하였으나 계약금액 규모·급증의 구조적 타당성 등에 대한 객관적 비교·검증을 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특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고 계약 시 계약단가 산정을 철저히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통보)

39	지정기부금 사업 직접 수혜자 선정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나,
- 농협재단은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쌀과자 제조기를 지역농협에 공급함으로써 직접 수혜자가 지역농협이 되었고 불특정 다수인 농업인 등은 간접수혜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고, 향후 직접 회원농협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개선방안 마련 (통보)	

40	수의계약 규정 및 절차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해야 하나,
- 농협재단은 대부분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농협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계약규정」 및 「계약준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생략할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필요한 경우에만 납부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 총 87건의 계약 중 22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서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되는 서류가 미비하였고, 38건은 '농협계열사와 계약'의 사유로 현금이나 보증서 등의 방법을 통한 계약 보증금을 전부 면제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계약 체결 개선방안 마련 (개선)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하게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 관련 서류 생략,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 실시 (통보)

41	결재 체계 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직제규정」의 전결기준표에 따라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무관리준칙」에 따라 이사장 및 전무이사 권한의 일부가 하위 직책에 위임되었을 경우 “전결” 또는 “대결”로 표시 후 결재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직제상 존재하지 않는 전무이사에게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하여 전결권자로 지정한 뒤 직책공석을 이유로 그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대결하도록 하였으며, 사무총장은 “전결” 혹은 “대결” 표시 없이 결재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무관리준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재 권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결재 권한에 맞지 않게 결재 체계를 운영한 농협재단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전무이사의 자리가 공석임에도 전결권을 부여하고, 결재의 대부분을 대결권자인 사무총장이 하도록 운영해 온 결재 체계를 직무권한과 책임에 맞게 개선 (개선)

42	직원 특별성과급 등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직원급여 및 복지준칙」 및 「직제규정」에 따라 특별성과급 및 수당 집행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전무이사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특별성과급을 경영성과 등과 관련 없는 사유로 지급하였으며, 결정권자인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아(전무이사 직제 미운영) 전무이사의 대결권자로 직원 신분인 사무총장의 결재를 득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경영진(이사장, 전무이사)의 승인 없이 사무총장의 대결로 지급된 직원 특별성과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과 관련 준칙 개정 등을 이사회에서 재심의 조치 (시정)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각종 수당의 지급을 관련 규정 및 준칙의 취지·절차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 요구 (개선)

43	♣신문사에 대한 사업 집행 절차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이사회규정」 및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나,

- ♣신문사 사업이 농협재단 이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항임에도 이사장이 의결에 참여하였고, 사업 도입 후 효과성과 복지·장학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한 재검토 없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 추진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신문사 관련 사업 추진 시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선정·집행의 투명성 및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 (통보)

44	자산운용 및 관련 내부통제규정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 시정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기초하여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분기별·월별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연간 자산운용계획 및 분기별·월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2,099억 원을 회원 조합 및 NH농협은행이 판매하는 예금에 조합 또는 지점 선정에 대한 기준 없이 임의 운용함
-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자산 운용 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정도를 낮춘 후 거래하거나, 이해상충이 없는 자산 운용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의 임원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에 예치하면서, 농협재단과 ▽농협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해상충 정도의 조정 없이 거래함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자산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내부통제규정」의 이해상충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운영한 농협재단에 “기관주의” 조치 (기관주의)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부통제규정」의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자산운용대상을 재선정하도록 조치 (시정)

4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준수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나,
- 농협재단은 중앙회가 투자 참여자라는 이유로 투자하여 농협재단 자산의 유동성을 훼손함
- 직원을 피보험인으로 연금보험을 투자 명목으로 계약하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운용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투자 자산에 대한 전수 검토를 실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46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위험자산을 운용할 경우 외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험자산의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및 손실한도의 설정·관리, 투자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총 20회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여부만을 결정하였을 뿐 위험자산의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및 손실한도의 설정·관리 등은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위험자산(증권)을 안전자산(채권)으로 분류하여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운용함
-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은 기타 특수관계자의 임직원을 70% 참여시켜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위험자산의 투자기간, 목표수익률 및 손실한도의 설정·관리 등을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고 자산을 운용한 농협재단에 “기관주의” 조치 (기관주의)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자산운용규정」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공정하고 자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개선)

47	예산·결산 절차 이행 미흡		
처분요구	시정,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 농협재단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매해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의 처분 없이 계속 이월하였음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산편성요강에 따라 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에 전년도와의 비교증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회계별·계정과목별로 편성하여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에 전년도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지 않고 당해연도 예산만 작성하여 예산편성요강을 미준수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조치 (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예산편성요강에 따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직원 교육 등 실시 (통보)

48	지정기부금 사업의 이사회 심의·의결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재단법인 농협재단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목적사업, 지정기부금 사업, 수익사업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2025년 7개의 지정기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재단법인 농협재단 정관」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명시한 만큼 지정기부금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49	기부금품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경고,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농협재단에서 기부금품 사업을 집행할 때는 「재단법인 농협재단 정관」에 따라 수혜자 선정에 차별이 없기 위해 수혜자 선정·금품 전달·사후정산 전 과정의 증빙과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방안 등 적절한 통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기부금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배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지역 농·축협 및 농협 지역본부에 일괄 배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단법인 농협재단 정관」 및 「내부통제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기부금품 지원사업을 추진한 농협재단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기부금품의 목적 외 사용과 수혜자 특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준 마련 (개선)

50	해외 출장에 대한 증빙자료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은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임원 선진지 견학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견학보고서에 방문기관의 일반적인 개요 등만 작성하고 현지 기관을 방문하였는지 알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미비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임원 선진지 견학 등 해외 출장 시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 마련 (개선)

51	홍보용 기념품 집행·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홍보사업비 집행 및 홍보용 기념품의 취득·보관·배부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물품관리 장부 운용 등 내부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홍보용 기념품을 구입하면서 기본적인 물품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취득·배부·재고관리 등 전체 과정이 불투명하게 관리되었음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홍보용 기념품의 취득·보관·배부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 마련 (개선)

52	이사회 구성·운영 부적정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은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하여 법인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관에 따라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정해야 하나,
- 농협재단은 관행적으로 중앙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실질적 임원 추천권을 부여하였고, 이사회를 중앙회 관련자와 지역농협 조합장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 이사회를 독점적으로 구성·운영하였으며, 농협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은 이를 견제하지 못함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법인 운영 전반의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기구로서 이사회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관 및 제규정의 이사회 관련 조항을 보완 조치 (개선)

53	내부통제 시스템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부당한 점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내부감사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등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 이사회 중 감사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별도의 의견 혹은 지적 없이 매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내부감사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능이 미비하였음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내부감사를 통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체계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중 감사는 독립된 감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 (개선)

54	사무총장 및 장학관장 채용 절차 미흡		
처분요구	경고,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인사규정」 및 「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따르면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전형 시기와 방법을 이사장이 정하고 채용구비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농협장학관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농협장학관장은 M·3·4급의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사무총장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별도의 전형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고 이사장의 지명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력서를 제외한 채용구비서류를 제출받지 않음
- 또한 농협장학관장을 사실상 4급 이상으로 구분되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협장학관 운영규정」 및 「직제규정」에 따라 농협장학관장을 M·3·4급의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나 전문계약직으로 임용한 농협재단에 “기관경고” 조치 (기관경고)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직위에 적합한 직원이 임용·배치될 수 있도록 직원 채용, 인사발령, 중앙회에서의 파견 임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

55	직원 출장 복무상황 관리 미흡		
처분요구	통보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의 출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출장 명령에 의하여야 하고, 성실의 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준수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 ○장은 출장을 실시하면서 출장사유를 지역의견수렴, 업무협의 등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이었는지 불분명하게 기록하였고, 출장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운행일지 등도 구비하지 않음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출장 시 출장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조치하고, 「복무규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통보)

56	직원 업무용 사택 운용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농협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용사택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택 공급 대상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사회규정」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업무용사택 관리기준」을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립하여 중앙회의 사택관리기준보다 사택 규모, 집기 금액 등을 과다하게 정했고, 서류 제출과 대상 요건 여부에 관한 심사과정을 생략하였음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업무용 사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용사택 운영기준’을 재정비하고, 세부사항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개선 (개선)

57	비상근 임원 활동수당 및 퇴임공로금 집행·관리 미흡		
처분요구	개선	관계기관	재단법인농협재단

- 「재단법인 농협재단 정관」에 따르면 상근하지 않는 임원에게는 실비를 제외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으나,
- 농협재단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월 1백만 원 가량의 활동수당을 고정급 보수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표창준칙」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공로패와 퇴임공로금 등 표창은 인사위원회의 의결 및 전무이사의 전결을 받아 이사장이 시행하여야 하나,
- 농협재단은 퇴임하는 임원에게 공로패와 퇴임공로금을 지급하고, 이사장에게 공로패와 부상금을 지급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전무이사의 전결을 받지 않음

재단법인농협재단

재단법인농협재단이사장은 「재단법인 농협재단 정관」 및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비상임 임원에게 활동 수당 및 퇴임공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체계를 개선하시고, 비상임임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도록 조치 (개선)